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2021. 3



고용노동부

목 차

I 배경

II 근로시간 규정 개관

III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IV 시행령 개정 관련 추가 유의사항

I 배경

- ◇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장시간 근로 개선, 일·생활 균형 달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추진**
- ◇ '18.7월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 시행**
 - ▲ ('18.7) 300인 이상 ▲ ('20.1) 50~299인 ▲ ('21.7) 5~49인
- ◇ 주52시간제 보완입법(**탄력근로제 등 개편**) 추진
 - * ('19.2.19.) 노사정 합의 → ('20.12.9.) 국회 본회의 통과 → ('21.1.5.) 공포 → **('21.4.6.) 시행<5~49인은 '21.7.1. 시행>**

Ⅱ 근로시간 규정 개관

1. 근로시간의 의의 및 판단 원칙

- ◇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거부 시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 정도 등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 ◇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 법정 :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1주, 1일 단위로 제한되는 근로시간(성인, 연소자, 유해·위험작업)
 - 소정 :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
-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제외,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포함

Ⅱ 근로시간 규정 개관

2. 법정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 법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유해·위험작업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

◇ **1주 최대 52시간 가능** (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

<기본적인 근로시간 규정>

법정근로	연장근로
1주 40시간	1주 12시간

<주52시간 이내>

유연근로제
(운영형태 변경) 탄력, 선택 (계산방법 변경) 재량, 사업장 밖

<주52시간 초과>

연장근로 예외
특별연장근로, 추가 연장근로, 특례제도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5인 미만 △농림·축산·수산업 △감·단 승인 근로자 △관리·감독·기밀 업무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

○ 연장·야간근로 : 통상임금 50%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Ⅱ 근로시간 규정 개관

구분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휴일근로	비고
성인 (18세 이상)	남성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주 12시간	별도 규정 없음	
	여성	상동	상동	근로자 동의	
연소자 (18세 미만)		1일 7시간, 1주 35시간	1일 1시간, 1주 5시간	원칙적 금지 근로자 동의 <u>고용노동부 인가</u>	<u>탄근·선근·추가연장*</u> 적용 제외 * 30인 미만 1주 8시간 이내 (‘21.7.1.~’22.12.31.)
임산부	<u>임신중</u>	1일 8시간, 1주 40시간	절대 금지	원칙적 금지 근로자 명시적 청구 <u>고용노동부 인가</u>	<u>탄근</u> 적용 제외
	산후 1년 미만	상동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근로자 동의 <u>고용노동부 인가</u>	

Ⅱ 근로시간 규정 개관

3. 유연근로시간제

- ◇ (의의) 근로시간을 적절히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 * (운영형태 변경)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 * (계산방법 변경)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 ◇ 각 제도별로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등 요건을 확인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입·운영

Ⅱ 근로시간 규정 개관

3. 유연근로시간제

유 형	내 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 업무량에 따라 주·일별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여 평균적으로 1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 ▶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선택적 근로시간제	▶ 일정기간(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는 제도 ▶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 연구개발, 디자인, 설계 등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	▶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 통상 필요한 시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 ▶ 영업직, A/S 업무, 출장업무 등
재량 간주 근로시간제	▶ 업무 성질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

Ⅱ 근로시간 규정 개관

4. 주52시간제의 예외

(1) 특별연장근로

- 특별한 사정 + 근로자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가능
- '20.1.31.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인가사유 확대
 - ①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이나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②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③ 시설·장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상황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④ 업무량 폭증+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 발생
 - ⑤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Ⅱ 근로시간 규정 개관

4. 주52시간제의 예외

(2) 추가 연장근로(30인 미만)

- 3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1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 **한시적('21.7~'22.12) 허용**
⇒ **1주 최대 60시간**(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추가 연장 8시간) 근로 가능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

- **특례업종**으로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한 제도
 - ①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② 수상운송업
 - ③ 항공운송업 ④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

Ⅱ 근로시간 규정 개관

4. 주52시간제의 예외

(4)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 일부 업종·직종에 대해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 제외**

△ 농림·축산·양잠·수산 사업(1차산업)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 취급 업무 종사자

Ⅲ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 ◇ 주52시간제의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보완입법 추진
→ 기업의 애로 해소와 노동권 보호의 조화 도모

근로시간 유연성 강화	노동권 보호
▶ 탄력근로제 개선 - 3~6개월 이내 신설 - 주 단위로 근로시간 사전 확정 - 불가피한 경우 주별 근로시간 변경 ▶ 선택근로제 개선 -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정산기간 최대 3개월 이내 확대	▶ 건강권 보호 - 3~6개월 탄근, 1개월 초과 선근 운영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의무화 ▶ 임금보전 - (3~6개월 탄근) 임금보전방안 마련·신고 - (탄근) 단위기간보다 짧은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정산 - (1개월 초과 선근) 매 1개월마다 가산임금 정산

Ⅲ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1. 탄력적 근로시간제

◇ (단위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설**

* 기존 2주 이내, 3개월 이내 제도는 유지

◇ (도입요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사전 확정) **서면합의로 주별 근로시간**을 사전 확정

*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각 주의 개시 2주 전까지 근로자 통보

○ (중도 변경)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 변경 가능**

*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근로일 개시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

Ⅲ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1. 탄력적 근로시간제

◇ (건강보호)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 부여**

- '근로일 간'이란 특정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때부터 다음 근로를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를 말함
- 다만,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름

- * ①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 및 예방
- ②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③ 그 밖에 ① 및 ②에 준하는 사유

Ⅲ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1. 탄력적 근로시간제

◇ (임금보전) 보전방안 마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 **신고의무 면제**

○ 단위기간 중 **실제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해 **가산임금 지급**

* 기존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에도 동일하게 적용

◇ (적용제외) 18세 미만 **연소자, 임신 중인 여성**

* 기존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에서도 동일

Ⅲ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단위기간별 탄력 근로시간제 비교>

구분	2주 이내	3개월 이내	3~6개월
도입요건	취업규칙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①대상근로자, ②단위기간 ③ 근로일, 일별 근로시간 ④서면합의 유효기간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①대상근로자, ②단위기간 ③ 주별 근로시간 ④서면합의 유효기간
근로시간 중도변경	관련 규정 없음	관련 규정 없음 다만, 해석상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로 변경 가능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 로 변경 가능 ①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②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 유지 ③변경된 일별 근로시간은 근로일 개시 전 통보
최대 근로시간	특정주 48시간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각 주마다 12시간 이내 (단위기간 평균 1주 12시간 이내가 아님) ※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정산기간 평균 1주 12시간 이내		

Ⅲ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2. 선택적 근로시간제

◇ (정산기간)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
정산기간을 **3개월 이내**로 확대

* 재료, 제품, 생산·제조공정 등의 개발 또는 기술적 개선(무형제품 연구개발 포함)

◇ (건강보호) 정산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 부여**

○ 다만,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름

* ①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 및 예방**

②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③ 그 밖에 ① 및 ②에 준하는 사유

Ⅲ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2. 선택적 근로시간제

- ◇ (임금보전) 정산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 지급
- ◇ (적용제외) 18세 미만 연소자

Ⅲ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3.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고시 제정 中>

1.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 실시

-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 ②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시간 부여
- ③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다음과 같이 연속 휴식시간 부여
 - (1주 미만) 특별연장근로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 시간만큼 휴식시간 부여
 - (1주 이상)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보장

2.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3.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 통보

4. 건강검진 결과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휴가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 적절한 조치 실시

Ⅲ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4. 시행시기 및 준비행위

◇ (시행시기) 탄력·선택근로제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 적용

▲ ('21.4.6.) 5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21.7.1.) 5~49인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건강보호 조치 의무는 '21.4.6. 시행

◇ 법 시행 이전에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행위 가능

*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1개월 초과 선택근로제 도입을 위한 서면 합의 등

IV

시행령 개정 관련 추가 유의사항

1. 근로조건 서면 교부

◇ 근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

*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과 공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명시

○ 단협·취업규칙의 변경,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

◇ 법 개정으로 신설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사항 반영

IV

시행령 개정 관련 추가 유의사항

1. 근로조건 서면 교부

◇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조건을 서면 교부하는 경우 추가

- (기존)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도입(51조 1항), 선택근로제 도입(52조), 보상휴가(57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58조 2항), 재량근로제(58조 3항), 특례제도(59조), 연차휴가 대체(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 (추가) 3~6개월 탄력근로제 도입·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예외·임금보전방안 신고의무 예외(51조의2 1항·2항 단서·5항 단서), 선택근로제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예외(52조 2항 1호 단서), 30인 미만 추가 연장근로(53조 3항), 공휴일 대체(55조 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IV

시행령 개정 관련 추가 유의사항

2. 보존 대상 서류

- ◇ 근거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
 - 시행령에서 보존 대상 서류의 하나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서류”를 규정
- ◇ 법 개정으로 신설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사항 반영

IV

시행령 개정 관련 추가 유의사항

2. 보존 대상 서류

◇ 3년간 보존해야 하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서류 추가

- (기존)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도입(51조 2항), 선택근로제 도입(52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58조 2항), 재량근로제(58조 3항), 특례제도(59조)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서류
- (추가) 3~6개월 탄력근로제 도입·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예외·임금보전방안 신고의무 예외(51조의2 1항·2항 단서·5항 단서), 선택근로제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예외(52조 2항 1호 단서), 30인 미만 추가 연장근로(53조 3항), 공휴일 대체(55조 2항 단서), 보상휴가(57조), 연차휴가 대체(62조)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서류

감사합니다.